#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97

발의연월일: 2022. 2. 22.

발 의 자 : 김승남 · 윤재갑 · 이개호

위성곤 · 주철현 · 김정호

양정숙 • 박영순 • 이원택

송갑석 · 최인호 · 이수진 비

신정훈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 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

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 의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안정위원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 대책의 수립·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곡수급안 정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3에따른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 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시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 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 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 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 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다.

⑥·⑦(생략) <신 설>

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⑤
<u>사항은</u>
<u>.</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양곡수급안정위원회)

-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